

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시가 시행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자격자에게 경비부과의 근거와 기준 등을 규정한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「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농어촌정비법」

제10조(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)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“한국농어촌공사”라 한다)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농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이 현 선
	팀 장	정 은 진
	담 당 자	공 병 권 (480-5797)